

등록번호	가로환경과-2610
등록일자	2015.2.10.
결재일자	2015.2.1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도로행정팀장	가로환경과장	안전건설국장
김영철	김광태	백기운	02/10 박희균
협 조			

201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계획



안전건설국
가로환경과

201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계획

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일부 감액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근거법령

- 도로법 제38조(도로의 점용), 제41조(점용료의 징수)
-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(점용료등의 부과 징수)
-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(점용료등의 부과 징수)

II 부과현황

(단위:건수/천원)

부과 년도	합 계		도로점용료(시일반)		도로점용료(구일반)		하천사용료(시일반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2014	1,048	9,836,059	414	6,206,878	239	2,998,779	395	630,402

(※ 배분율 : 국·시유재산 사용료 50%, 국·시유재산 변상금 40%)

III 부과개요

- 대 상 자 : 만리동1가 62-10 서재규 외 1,156명(사용허가 대상자)
- 부 과 일 : 2015. 3. 5(정기분 일괄 부과예정)
- 납부기한 : 2015. 3. 31

■ 추진일정

추진일자	추진내용
2015.01.01~01.30	도로점용갱신
2015.02.23~02.27	소상공인접수
2015.03.05	점용료부과
2015.03.06~03.31	세금계산서발행
2015.04.01~	민원처리

IV 추진계획

■ 도로점용 기간연장(갱신) 신청자 처리

- 도로점용 기간연장 미신청자 안내문 발송 및 신청접수
- 도로점용 연장 허가증 발급

■ 소상공인 점용료 감면 대상자 확인

- 관련법률 : 도로법 제42조 제5호(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)
- 내 용 :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차량진·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**도로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**
- 소상공인 감면 확인 절차
 - 기존 차량진·출입로 허가자 : 기존 확인자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까지 유예
 - 신규 차량진·출입로 허가자 : 소상공인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접수
 - ※ 확인 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재무재표, 지분관계도
- 접수기간 : 2015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전일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소상공인 확인 후 도로관리시스템 입력후 감면 부과 조치

■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

- 도로점용료 부과후 전자메일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
- 점용료 분할신청자에 대해서는 분할된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

■ 사후 민원처리

-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 신청에 대한 민원 응대
- 도로 점용면적 변경 및 원상회복 민원 접수
-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공문 발송

V

행정사항

■ 각 동담당 :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 발송, 사후민원처리

연번	담당자	동 명	비 고
1	김영철	회현동, 명동, 중림동	점용료총괄
2	김광영	소공동, 을지로동, 청구동, 동화동	차량진·출입로총괄
3	이현우	신당동, 다산동	공중선총괄
4	양원석	필동, 광희동, 신당5동, 황학동	하천점용총괄
5	이주현	장충동, 약수동	세외수입총괄

■ 점용료총괄담당 : 점용료 부과자료 일괄결의(2015. 3. 5일 예정)

■ 세금계산서담당 : 세금계산서 부과내역 및 자료 세무과 제출

■ 세외 수입 담당 : 체납분 독촉공문 발송 및 압류를 통한 납부독려